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6-학인-00039 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

(피 해 자) (□□□초등학교 ▯학년 ▯반 학생 ○○○○)

피 신 청 인 ●●●(□□□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교사가 교실에서 해당 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인격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신청인에 대해 신분상 처분 및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초등학교장에게,

가. 위와 같은 학생인권침해 행위는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인권교육 등)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학생 및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및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6. 12. 5.(월)

나. 신청인 : ○○○(피해자 母)

다. 피해자 : ◎◎◎(□□□초등학교 ㉠학년 ㉡반 학생)

라. 피신청인 : ●●●(□□□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마. 구제신청요지

2016. 11. 22.(화) 피신청인은 □□□초등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신청인)를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2. 관련규정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및 피해자

[별지 2] 신청인 및 피해자의 주장과 같다.

나. 피신청인

[별지 3]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주장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6. 11. 18.(금) 학급에서 운영되는 미니사회연습장프로그램¹⁾에서 환경부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신청인은 학급 학생들이 영어시간에 만들어 온 과제물들에 해당 학생들의 이름표가 부착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였다.

2) 2016. 11. 21.(월) 피신청인의 지시 사항을 피해자가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 2)

1) 피신청인이 6학년 6반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미니사회는 학습부, 환경부, 생활부, 독서부 등의 부서를 만들어 부서에 팀장과 팀원을 두고, 실제 사회에서처럼 팀장과 팀원들의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등 각종 사회 조직들의 운영에 대해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빠듯 빠듯한 애”, “공공의 이익”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지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표현의 사실여부는 본 사건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신청

3)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신청인은 2016. 11. 21.(월) 18:50경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다.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내일 직접 오셔서, 아이들에게 확인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4) 2016. 11. 22.(화) 신청인이 직접 반에 찾아가지 않았으며, 교감을 면담하였다.

5) 2016. 11. 22.(화) 피신청인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녹음을 한다고 하면서, 위 1)항의 지적사항에 대해 묻고 녹음을 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학생들에게 “난 지금 이 순간부터 미니사회연습장을 하지 않겠다. 열심히 가르치려고 한 것인데 칭찬은 받지 못할망정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미니사회연습장을 하지 않겠다. 단, ○○○의 어머니가 나에게 사과를 하면 하겠다.”고 말하였다.

6) 위 5)항과 같은 말을 하고 난 이후, 피신청인은 교실 뒤편의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 7개를 떼어냈다.

7) 피해자는 위 5)항, 6)항과 같은 말과 행동을 보고, 이후 이동수업을 하러 가는 도중 울었고, ㉠학년 ㉠반 학생 중 한명이 피해자에게 “이제 나는 00 부장 못하겠네”와 같이 말을 하자, 피해자가 해당 학생에게 “미안해”라고 사과를 하였다.

나.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인의 주장이 사실이든지, 피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든지 학생인권침해로 보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결정에서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이 내용은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 정도로 보여진다)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는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생은 인류가 가진 보편적 권리의 주체로서 헌법 및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학생을 지도하면서, 학부모와 교사의 주장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 그 주장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위 인정사실 5)항과 같이 교사가 학부모의 주장을 학부모의 자녀가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를 확인, 녹음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서로의 주장이 다름을 확인하는데 관련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꼭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 외에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로 인해 학부모의 자녀(피해자)는 타 학생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위 인정사실 5)항과 같이, 교사가 학부모의 자녀가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학부모의 사과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부모의 자녀가 이로 인해 받게되는 모욕감과 수치심은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동료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 및 모욕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정서적인 폭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서적인 폭력이 있는 상황에서, 위 인정사실 6)항과 같이 교실 뒤편의 게시판의 게시물을 떼어내는 행위는 그 폭력의 정도를 더욱더 심하게 만들었던 행위로 보여진다.³⁾ 그 결과로 위 인정사실 7)항과 같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행했던 프로그램을 학부모의 사과를 요구하며 폐지하는 것은 그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같은 반 학생들의 인격권 및 폭력(정서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행위는 인권침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학부모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미니사회연습장을 유지하는 것은 무질서이며, 교사가 무질서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교육상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단, 사과를 받으면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학부모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그것에 대해 사죄했을 경우 미니사회연습장을 다시 하는 것이 질서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사유를 들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

3) 교사의 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불안감, 모욕감, 수치심 등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행위를 한다면, 이는 앞선 행위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되므로 “연관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는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16.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임 송 (인)

[별지 1: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별지 2 : 신청인 및 피해자의 주장]

2016. 11. 18.(금) 피신청인은 환경부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에게 학생들이 만든 작품에 이름표를 부착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아 같은 달 21.(월) 2교시 경 “환경부장 너 그일 했어? 안했어?”라고 추궁하면서, “니가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할거 같았으면 환경부장을 머리가 빠듯빠듯한 아이에게 시킬걸 그랬어.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지.”라고 하여 피해자의 마음이 상했다.

2016. 11. 21.(월) 18:30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머리가 빠듯빠듯한 아이에게 시킬걸 그랬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지”와 같은 말을 했는지 묻자,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내일 학교에 와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신청인이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라고 하였다.

2016. 11. 22.(화) 신청인은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면담하면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학년 ㉸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 녹음 좀 할게”라고 이야기하고, 휴대전화를 학생들 앞에 놓고 “선생님이 ○○한테 머리가 빠듯빠듯 못하다고 했어? 안했어?”라고 질문을 하고, 이후 학생들에게 “○○ 엄마가 선생님한테 정중히 사과하기 전까지 미니사회를 안할거야”라고 이야기하고, 교실뒤에 부착되어 있던 관련 게시판을 다 떼어버리를 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동수업을 하러 가면서 울었고, 반의 한 친구가 “이제 나는 00부장 못하겠네”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는 “미안해”라고 사과하였다.

[별지 3 : 피신청인의 주장]

2016. 11. 18.(금)경 학급에서 환경부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에게 학급 학생들이 영어시간에 만들어 온 과제물들에 해당 학생들의 이름표가 부착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였다. 같은 달 21.(월) 2교시 이후 피해자에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물었으며, 일을 준지 시간이 꽤 흐르도록 일이 되어 있지 않아,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빠릿 빠릿한 애, 공공의 이익” 등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2016. 11. 21.(월) 18:50경 신청인이 전화를 걸어와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말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이 이를 믿지 않고 계속 추궁하여, “내일 직접 오셔서, 아이들에게 확인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2016. 11. 22.(화) 신청인이 직접 반에 찾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동료교사에게 신청인이 전날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가지고 교무실로 교감선생님을 찾아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래서 그 일로 교감,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하였다.

2016. 11. 22.(화) 학급 아이들에게 녹음을 한다고 하면서, 어제 신청인이 본인에게 항의한 내용(피해자의 머리가 빠릿빠릿하지 못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아이들에게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모든 아이들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주었다. 녹음을 한 이유는 신청인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학생들에게 “난 지금 이 순간부터 미니사회연습장을 하지 않겠다. 열심히 가르치려고 한 것인데 칭찬은 받지 못할망정 이런 대접

을 받으면서까지 미니사회연습장을 하지 않겠다. 단, ○○○○ 어머니가 나에게 사과를 하면 하겠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학부모가 잘못된 것이 들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미니사회연습장을 유지하는 것은 무질서이므로, 교사가 무질서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교육상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었다. 사과를 받으면 다시 하겠다고도 했는데, 이것은 학부모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그것에 대해 사죄했을 경우 미니사회연습장을 다시 하는 것이 질서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은 아이들에게 질서 있는 언행을 하였고 아이들은 그것을 지켜보았을 것이며, 아이들은 공교육 교사가 질서 있게 사건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위와 같이 말을 하고 나서, 각 모듈별 목표와 다짐을 적어 놓은 게시물 7개를 떼어 냈다. 반에는 7개의 모듈이 있는데, 1년에 4번 모듈 구성을 바꾼다. 그래서 다른 게시물로 바꾸기 위해 떼었던 것이지, 위와 같은 말과 연관이 없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후 이동수업을 하러 가는 도중 우는 것을 본 적 없으며, 1학년 1반 학생 중 한명이 피해자에게 “이제 나는 00 부장 못하겠네”와 같이 말을 하자, 피해자가 해당 학생에게 “미안해”라고 사과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 이후, 교감선생님과 면담할 때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다.